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 - 127호

2022년도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및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내 사항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6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 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하는 **추가합격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 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 여부 및 인원은 서류 미제출자 등을 포함한 면접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의 인원 및 충원 사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제2차 시험(면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수험생은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합격선

모집단위	합격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일반	95명	119508	119552	119555	119632	119732
		119734	119788	119839	119878	119924
		119966	119978	120032	120033	120038
		120203	120228	120238	120249	120256
		120267	120279	120289	120314	120345
		120361	120468	120630	120634	120670
		120676	120712	120761	120792	120833
		120935	121002	121042	121102	121121
		121177	121179	121191	121235	121255
		121264	121322	121331	121338	121366
		121431	121524	121549	121563	121580
		123748	123761	123811	123820	123829
		123846	123857	123878	123890	123915
		123925	123952	123966	123970	123987
		124046	124050	124086	124102	124134
		124135	124139	124141	124178	124200
		124290	124322	127955	128027	128030
		128041	128051	128070	128079	128080
		128082	128106	128121	128126	128144
장애인	2명	123525	123526			
저소득	2명	123611	123629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

구 분	일 반	장애인	저소득	비 고
합격선	67.50점	47.50점	75.00점	-

나. 필기시험 성적은 아래 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kpost.jinhakapply.com)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성적 확인 기간

구 분	기 간
필기시험 불합격자	'22. 6. 21.(화) 10:00 ~'22. 12. 31.(토)
필기시험 합격자	'22. 7. 29.(금) 10:00 ~'22. 12. 31.(토)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필기시험 성적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 기간: 2022. 6. 21.(화) ~ 2022. 6. 27.(월) 18:00까지

2) 제출 방법: 등기우편*(익일특급) 또는 직접 제출(택배, 퀵서비스 불가)

*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추후 서류 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 될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자명의 이외에 서류 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및 자택 등)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 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 접속 후 【배송조회】에서 등기번호(13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단기간에 서류가 폭주하므로 이메일, 전화 또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하시더라도 서류의 도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3) 제출처: **응시지역 관할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응시지역별 관할 지방우정청 주소 》

지역	우정청	주소	전화/팩스
부산·울산·경남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전화) 051-559-3236 팩스) 0505-005-1457

※ 제출 서류를 넣은 우편(서류)봉투 겉면에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재중」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필기 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에 시험공고일(2022. 2. 23.) 현재, 응시한 부산지방우정청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 1통(해당 합격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등 취업지원 특전을 받는 자는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해당 합격자에 한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4) **저소득층 확인 서류 각 1통(해당 합격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각 1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각 1통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군복무: 주민등록초본 / 교환학생: 학교 발급 서류(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첨부

다. 기타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유효하며, 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가. 시험 일시: 2022. 7. 23.(토) / 08:00~18:00

나. 시험 장소

기관명	시험 장소	비고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 9층 대회의실	-

※ **개인별 세부 면접 일정(오전/오후 응시대상자 구분)은 2022. 7. 12.(화)에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s://www.koreapost.go.kr/bs)**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http://kpost.jinhakapply.com)**에 공고합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일시·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오전 응시자가 오후에, 오후 응시자가 오전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면접장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면접도 응시자와 면접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거리(2m내외)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의 면접시험 진행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2022. 7. 12.(화)의 **추가 공고**에서 **개인별 면접 일정**(오전/오후 구분에 유의)과 **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표·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기구(검정볼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면접시험장(응시자대기장)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준수사항은 2022. 7. 12.(화)의 추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안내

○ 면접시험 응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등 응시자는 붙임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편의제공 신청내용과 사유를 2022. 6. 24.(금)까지 우정청별 담당자 전자메일(munjingeun@korea.kr)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대상**: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편의제공 문의: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51)559-3236

○ 편의제공 내용 중 **면접과제 작성시간 1.2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 발급(2020.7.22.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6.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포기 등에 따라 면접시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공고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은 2022. 7. 12.(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포기자가 적어 법령에 의한 추가합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충원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자: 2022. 7. 29.(금) 10:00 ~

나.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kpost.jinhakapply.com)에 게시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지체장애	상지	· 면접과제 작성시간 1.2배 연장(의사진단서 필요)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구 O급)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하지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뇌병변장애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면접과제 작성시간 1.2배 연장(의사진단서 필요)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구 O급)로서 상지의 수의적 근육 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각장애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면접과제 작성시간 1.2배 연장(의사진단서 필요)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두 눈의 교정시력(좌, 우 각각 명시)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청각장애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기타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응시자 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